

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4년 3월 29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곽상현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Top3 CEO 안심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세목

명칭	세목
무배당(①) Top3 (②)CEO 안심보험(③)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 동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 ② 및 ③ 안에는 특정단체, 특정직업군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100세 만기	5/7/10/15/20년납	20세 ~ 75세	20세 ~ 75세	월납/연납 /6개월납
	110세 만기	5년납	20세 ~ 75세	20세 ~ 75세	
		7년납	20세 ~ 73세	20세 ~ 75세	
		10년납	20세 ~ 71세	20세 ~ 75세	
		15년납	20세 ~ 68세	20세 ~ 75세	
		20년납	20세 ~ 65세	20세 ~ 75세	
일반형	100세 만기	3/5/7/10/15/20년납	20세 ~ 75세	20세 ~ 75세	
	110세 만기	3년납	20세 ~ 73세	20세 ~ 75세	
		5년납	20세 ~ 71세	20세 ~ 75세	
		7년납	20세 ~ 70세	20세 ~ 75세	
		10년납	20세 ~ 68세	20세 ~ 75세	
		15년납	20세 ~ 65세	20세 ~ 75세	
		20년납	20세 ~ 62세	20세 ~ 75세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당월분 포함)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할인 하며, 최대 12개월분(당월분 포함)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해약환급금 일부지급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반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 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일반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일반형 상품”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하다.
- 다. “일반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과 달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 라.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수준을 “일반형 상품”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수준과 비교하여 안내한다.
- 마.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제 1 호)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다.

14.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연금전환에 관한 사항

- (1) 무배당 하나로연결된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 (2) 무배당 하나로연결된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시 무배당 하나로연결된연금전환특약의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 경우 명칭이 변경된 특약을 따른다.
- (3) 연금전환은 전환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다.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라.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 4-14 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한다.
- (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의 99%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별첨 제 1 호)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필수비교 확인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수비교 확인사항]

[기준: 성별 XX 세, XX 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XX 원]

□ 납입보험료 비교

구분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보험료		

□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경과기간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				
50년				

(별첨 제 2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3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4 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 청약서의 서식